

인천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232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D, E(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8,240,6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2,800원을 78,703,4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의 처분행위 및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

1)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6.경부터 F와 목재 거래를 하여 2020. 3.경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다.

2) A은 F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6.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6. 접수 제1093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이 사건 부동산과 충북 옥천군 G 외 3필지 중 각 일부 지분, 자동차, 보험예상해지환급금 채권 등 합계 약 4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H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합계 약 8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1) 신용보증기금은 2020. 5.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70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 E(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6. 9. 실제 배당할 금액을 401,946,242원으로 확정된 다음 1순위로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당해세 462,8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I에 181,506,574원, 근저당권자인 H 주식회사에 54,473,7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J 유한회사에 87,262,528원을 각 배당하고, 4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8,240,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1. 6. 10.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5,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권의 성립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A의 파산신청의 시점, 경위 등에 비추어 A에게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그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F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F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이 F를 위하여 피고에게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A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받은 가계수표도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하여 줄 테니 추가로 목재를 제공해 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 이상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A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F와 거래하였을 뿐 그 대표자인 A의 채무초과 여부는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경부터 F와 계속적으로 목재 거래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A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320,000,000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그 잔존가치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A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당표의 경정

1) 따라서 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8,240,640원을 삭제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2,800원을 78,703,440원(= 462,800원 + 78,240,640원)으로 경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 30,763,132원의 범위 내로 부인권 행사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켜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한 경우라도 그 부인권 행사는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로 이루어진 행위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이 처음부터 부인의 소 내지 부인의 청구를 한 경우와는 다르게 그 원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부인권 행사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까지 그대로 존속하여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후 잔액이 피고에게 배당되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인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1층 471.24㎡

2층 내지 10층 462.84㎡

11층 458.16㎡

12층 471.24㎡

13층 내지 19층 462.84㎡

지층 458.1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목 : 대 면적 : 2670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00.5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6708.8분의 45.011 (끝)

